

[경업금지약정]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, 부동산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- 약관 해

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7. 24. 선고 2015가합207255

판결



### 실무관행

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, 날짜,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,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

### 쟁점

부동산자 출력본,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” 규제를 받는지 여부,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

수 있는지 여부

판단기준 법리 -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요지

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(또는 흥정)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,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,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,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하고, 이처럼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.

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- 경업금지약정의 약관 성질 인정

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확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은 부동산자료 인쇄되어 있는 '근속 및 경업금지 확약서 양식'을 미리 준비하였고, 위 계약서 제2항에 경업금지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, 피고는 피고의 임원들로부터 동일한 양식의 근속 및 경업금지 확약서를 사용하여 경업금지확약을 체결한 사실, 이 사건 경업금지확약서는 공란으로 된 당사자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란을 각 수기로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, 피고가 원고 A와 이 사건 경업금지확약을 체결하면서 위 경업금지의무부과 조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원고 A가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확약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.

#### 판단기준 법리 -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요지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,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**부당하게 불리한 조항**으로서 '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'이라는 이유로 **무효**라고 보기 위해서는,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**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**하고,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·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.

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'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'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,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,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
####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- 직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

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경우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원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직후 동종의 게임을 제작하여 출시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점,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에서 경업금지 기간을 피고에서 퇴사한 후 2년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경쟁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어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 중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원고 A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.

첨부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7. 24.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

영업비밀, 기술유출, 경업금지, 전직금지, 민형사소송, 다수사건 A~Z 수행경력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